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산단 혁신 및 미래산업 육성 등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조직 재정비 및 전담기능 신설

나.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된 전국(장애인)체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

2. 주요내용

가.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
1) 일반직 계 : 1,755명 → 1,754명(△1명)

- 5급 : 90명 → 91명(+1명)

- 6급 이하 : 1,646명 → 1,644명(△2명)

2) 연구직 계 : 5명 → 6명(+1명)

- 연구사 : 5명 → 6명(+1명)

나. 한시정원표 조정(안 별표 4)

-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: 2021.5.31. → 2022.5.31.(1년 연장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, 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,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조례 제1238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1년 5월 31일”을 “2022년 5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조례 제1238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3]

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출장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795	1,795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754	1,754					
3급	1	1					
4급	11	6	1	1	1	2	
5급	91	41	3	5	4	13	25
6급이하 소계	1,644	1,644	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7					
별정직 계	1	1					
5급 상당			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1					
연구직 계	6	6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6	6					
지도직 계	33	33					
지도관	3				3		
지도사	30	30					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4]

한시 정원표(제6조 관련)

기 관 별	정 원		존속기한	비 고
	계	내 역		
총 계	3			
전국체전추진단	3	일반직 : 5급 1명, 6급 이하 2명	2022. 5.31	전국체전 준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조례 제1238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> 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이 조례에 따라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<u>2021년 5월 31일</u>까 지로 한다.	<조례 제1238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> 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--- ----- -----<u>2022년 5월 31일</u> --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⑤ 생략

제28조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~ ③ 생략

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

한다.

⑤ 생략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

③ ~ ⑤ 생략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담 당 관	박 주 영
	담 당	강 유 현
	담 당 자	박 민 주 (480-6773)